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9 선고 2018가합7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주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는 5,394,300원,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각 3,596,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9.부터 선정자 C, D은 각 2019. 4. 29.까지, 피고(선정당사자)는 2019. 4. 30.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선정자 C는 66,667,157원 및 그중 17,142,857원에 대하여는 1998. 11. 20.부터, 나머지 49,524,282원에 대하여는 2009. 5. 9.부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D은 각 44,444,771원 및 그중 11,428,571원에 대하여는 1998. 11. 20.부터, 나머지 33,016,200원에 대하여는 2009. 5.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94. 4. 28. 원주시 E 대 1,293㎡(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120/2586 지분, F 대 356㎡(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1/2 지분 및 제1, 2 토지 지상 단층공장 153.78㎡ 및 부속건물 28.20㎡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권자 G,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그중 제1, 2 토지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이하 '제1, 2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1994. 9. 28. 원고 소유 화성시 H 대 598㎡(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권자 I,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고(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1994. 11. 9. 화성군 J 임야 14,380㎡(이하 '제4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권자 I,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1996. 6. 7. 제1, 2 토지 중 각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K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1998. 11. 20. G는 위 경매절차에서 4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12730호로 피공탁자를 I으로 하여 제3,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00,000,000원과 경매비용 2,97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102,970,000원을 공탁하였고, I은 2008. 1. 3.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I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008. 7. 4. "원고는 I에게 3,678,68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7가합11128 판결), 원고와 I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바. I은 2008. 7. 31.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8. 7. 31.자 2008타채12723 결정),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L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12,586,701원을 배당받았다.

사. 2009. 4. 16.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I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나7267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2009. 5. 9. 확정되었다.

아. I은 2015. 5. 27. 사망하였다. 선정자 C는 I의 배우자로서, 피고와 선정자 D은 I의 자녀들로서 각 I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11, 18,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40,000,000원 및 102,970,000원에 관하여

제1 내지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어음채무인데,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40,000,000원을 배당받아 I에게 지급하였고, I은 제3, 4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공탁금 102,97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I의 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102,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12,586,701원에 관하여

I은 관련 소송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전부권자로서 12,586,701원을 배당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I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따라서 I의 상속인인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2,586,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40,000,000원 및 102,97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제1 내지 4 근저당권은 원고의 I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점, ② 관련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항변이 배척된 점, ③ 관련 소송에서 G와 I이 각 배당받은 40,000,000원과 102,970,000원이 원고의 I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I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와 I이 각 배당받은 40,000,000원과 102,97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12,586,701원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등 참조).

나) I이 2009. 2. 16. 관련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전부권자로서 12,586,701원을 배당받은 사실,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I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I은 원고에게 실효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12,586,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I이 12,586,701원을 배당받은 2009. 2. 16.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 6.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9. 12. 12.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 I이 수원지방법원 L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I이 관련 소송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므로 I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사건 소장 7.항)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가) 원고에게, 선정자 C는 5,394,300원(= 12,586,701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와 선정자 D은 각 3,596,200원(= 12,586,701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I이 배당받은 2009. 2.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9.부터 선정자 C, D은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9. 4. 29.까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9. 4. 30.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기홍, 판사 정현욱, 판사 고철만

선 정 자 명 단

1. B
2. C
3. D. 끝.

